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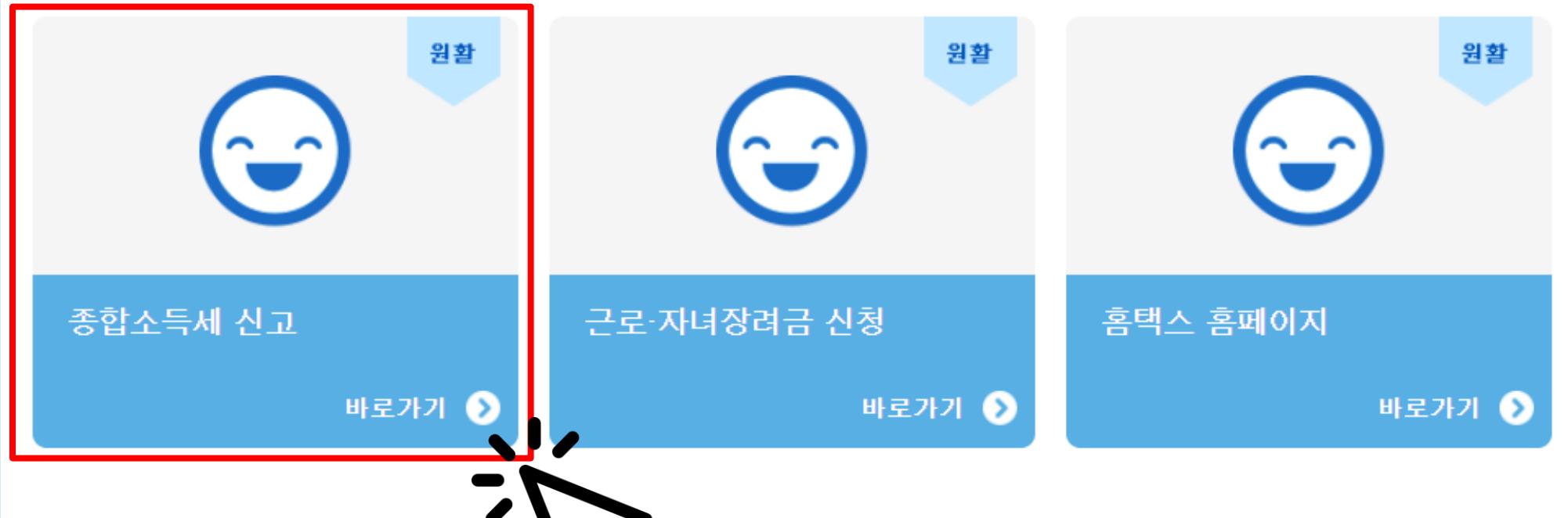
근로소득자 를 위한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서  
작성방법 안내

URL

[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검색창에 '홈택스' 검색)



- 이 화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임시 운영하는 화면입니다.



**경로**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신고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 · 납부서)

신고 부속 · 증빙서류 제출

삭제내역 조회

신고서 작성 |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

(고용)경정청구서류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금융소득 조회

신고도움서비스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일반 신고

근로소득 신고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선택

전자신고 매뉴얼

신고안내 동영상

## ① 기본정보 입력

- 신고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를 클릭후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하세요.
- 휴대전화, 세대주 여부 등을 입력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세요.
- 신고서 작성 중 연말정산 내역을 다시 불러와야 하는 경우 : 「새로작성하기」버튼 클릭 → 「확인」클릭 →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를 클릭 → 「연말정산 불러오기」클릭  
※ 이때, 작성중이던 신고서는 초기화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기본사항

1 주민등록번호 800101 - ..... 조회

2 연말정산 불러오기 ※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한 후 신고하세요.

3 휴대전화 010 - 1234 - 4561

4 세대주 여부 Y 내·외국인 내국인 거주구분 거주자 거주지국 KR 대한민국 확인

- 복수근로소득 신고안내 도움말
  -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변동되면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 소득·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공제하여 연말정산한 자
    -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 공제, 연금저축 등 과다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교육비 등 중복공제, 주택자금 중복공제 등에 대하여 직접 수정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 소득공제누락분 추가신고자 도움말
  -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변동되면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제출 누락자
  -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연말정산 자료가 없으므로 당해 화면에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 타소득 합산신고자
  - 이 화면을 이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일반신고서] 메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5 저장 후 다음이동

1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버튼 클릭

2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 확인 후 정정사항이 있는 지급명세서의 급여선택 및 공제선택에 체크

2개 이상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 모두 선택  
공제내역은 공제선택에 체크한 지급명세서의 공제내역을 불러옴

3 '휴대전화'와 '주소지전화' 중 하나 입력 필수

4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 여부'를 Y→N로 변경  
거주구분(거주자or비거주자 여부), 내·외국인 여부, 거주지국 확인 후

5 클릭하여 다음화면 이동

## ➊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후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하세요.

### ➋ 근무지별 소득명세

※ 종전 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해야 할 경우 「입력/수정하기」를 클릭하여 근무처별 급여 등 소득을 작성하고 아래 <(21)총급여> 항목에 급여가 합산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처별 소득공제 도움말 1  
입력/수정하기

※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종교인소득은 「입력/수정하기」를 클릭하세요.**

NO	근무처명	사업자등록번호	급여	상여	인정상여 등	계
1		124-37-97934	75,000,000	5,000,000	0	80,000,000

21. 총급여	80,000,000	22. 근로소득공제	13,750,000	23. 근로소득금액	66,250,000
---------	------------	------------	------------	------------	------------

### ➌ 인적공제 명세

※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 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를 해야 할 경우 「입력/수정하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명세 도움말 2  
입력/수정하기

24. 본인		1,500,000	28. 장애인	0 명	0
25. 배우자		0	29. 부녀자		0
26. 부양가족	1 명	1,500,000	30. 한부모가족		0
27. 경로우대	1 명	1,000,000	소계		4,000,000

1 클릭 시 근무지별 소득명세 팝업  
(슬라이드 5)

앞서 연말정산 불러오기로 불러온  
근무처별 급여, 상여, 인정상여 등 내역과  
기납부세액에서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클릭 불필요

2 클릭 시 인적공제 명세 팝업  
(슬라이드 6)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 명세나  
추가공제 대상 여부(장애인·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가족)에서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클릭 불필요

## 근무처별 소득명세

• 근로소득 근무지별 소득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동일한 회사에 퇴사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급여 등을 합해서 1건으로 입력합니다.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는 2건 이상 입력 불가함)

## • 근무처별 소득명세 자료 입력

※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종교인 소득은 하단의 「선택내용수정」을 클릭하여 <소득구분> 코드를 58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 있는 국내 근로소득 51		
9. 근무처명			
10. 사업자등록번호	124 - 37 - 97934	확인	
13. 급여	75,000,000	14. 상여	2,000,000
15. 인정상여	0	15-1.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0
15-2.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0	15-3. 기타소득계(임원퇴직소득금액한도초과액 및 직무발명보상금)	0
16. 계	77,000,000	원천징수영수증상결정세액 소득세	5,000,000
원천징수영수증상결정세액 농어촌특별세	0		



선택내용 수정 선택내용 삭제

<input type="checkbox"/>	소득구분	근무처명	사업자등록번호	급여	상여	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input checked="" type="checkbox"/>	51		124-37-97934	75,000,000	2,000,000	77,000,000	0	0

닫기 적용하기



- 1 클릭 시 근무처(회사)별로 제출한 지급명세서 명세 확인 가능  
제출된 지급명세서 내역 중 정정이 필요한 건을 선택
- 2 사업자 번호 확인버튼 클릭 후  
급여, 상여, 인정상여 등 금액, 원천징수영수증상결정세액 소득세(기납부세액) 수정 필요시 수정하고자 하는 금액 입력
- 3 등록 후 적용하고자 하는 지급명세서 건은 체크를 선택한 다음
- 4 적용하기 클릭

## 인적공제

## · 인적공제 입력

*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확인"/>	성명	* 내·외국인	<input type="button" value="내국인"/>
* 기본공제	<input checked="" type="radio"/> 해당자 <input type="radio"/> 미해당자	* 관계	소득자 본인		
③ 인적공제항목	<input type="checkbox"/> 70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부녀자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1

2

3

등록하기

## ·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주민등록번호	성명	관계	기본공제	70세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성별 (남:01, 여:02)	나이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800101-1*****	테스트개…	소득자 본인	Y	N	N	N	N	01	43	N
<input type="checkbox"/>	490229-2*****	공목자	소득자의…	Y	Y	N	N	N	02	74	N

구분	금액	구분	금액
1. 본인	1,500,000	5. 장애인	0명
2. 배우자	0	6. 부녀자	0
3. 부양가족	1명	7. 한부모가족	0
4. 70세 이상인 자	1명	8. 인적공제 계	4,000,000

닫기

입력완료



- 1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 2 입력한 부양가족과 신고자 간의 관계 선택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 3 추가공제 대상 여부 확인 후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
- 4 입력내용 등록 후 완료 시
- 5 클릭하여 공제·감면 입력 화면으로 이동

## ▶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

(단위: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31. 국민연금보험료공제	5,400,00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2011년이전 차입분	차입금 이자상환액 1 0년~14년
32. 공무원연금	0		차입금 이자상환액 1 5년~29년
군인연금	0		차입금 이자상환액 3 0년 이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	0		차입금 이자상환액 고정, 비거치식대출
별정우체국연금	0		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대출
33.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500,000		장기주택 저당차입 금이자상 환액 2012년이후 차입분 (15년이상)
계산하기			10년~ 14년
고용보험료	120,000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대출
3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출기관	192,000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대출
계산하기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대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거주자	0		그 밖의 대출
		35. 기부금(이월분)	0
		36. 특별소득공제 계(33+ ~+ 35)	1,172,000
		37. 차감소득금액	55,678,000

① 간소화자료 등을 이용하여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금액을 수정할 경우 클릭 (슬라이드 8의 팝업 이동)

② 간소화자료 등을 이용하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또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수정할 경우 클릭 (슬라이드 9의 팝업 이동)

그 외 항목은  
정정하고자 하는 공제 항목의 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수정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Chrome

dev-teht.hometax.go.kr/websquare/popup.html?w2xPath=/ui/rn/a/a/a/a/UTERNAAC68.xml&popupID=UTERNAAC68...

### 보험료(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공제 계산기

도움말 펼치기

1 \* 귀속년도 2023 ▾ 전체선택 선택해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불러오기

(단위:원)

구분	지출금액
① 건강보험료 등 납입금액	500,000
②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120,000
③ 소계(① + ②)	620,000
공제대상금액	620,000
소득공제액	620,000

3 계산하기 적용하기 닫기

-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를 계속 제공한 경우 전체선택 버튼 클릭  
근로하지 않은 달이 있는 경우 선택해제 클릭 후 근로를 제공한 달에만 체크한 다음 불러오기 클릭
- 간소화 자료로 제출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중 해당하는 달에 납입한 금액 확인 가능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직접 입력
- 계산하기 버튼으로 소득공제액 확인 후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



도움말 펼치기

\* 귀속년도

2023

전체선택

선택해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불러오기

1

## · 특별소득공제(주택임차금)

(단위 : 원)

구분	대상금액	공제금액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480,000	192,000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거주자 (직접 입력)	0	0
소계	480,000	192,000

## · 특별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단위 : 원)

항목		대상금액	공제금액
2011년 이전차입분	10년~14년 (600만원한도)	0	0
	15~29년 (1,000만원한도)	120,000	120,000
	30년 이상 (1,500만원한도)	120,000	120,000
2012년 이후차입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대출 (1,500만원한도)	0	0
	기타대출 (500만원한도)	0	0
2015년 이후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대출 (1,800만원 한도)	0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대출 (1,500만원 한도)	120,000
		그밖의 대출 (500만원 한도)	0
	10년 ~ 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대출 (300만원 한도)	0
소계		360,000	360,000



계산하기

적용하기

닫기

1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를 계속 제공한 경우 전체선택 버튼 클릭

근로하지 않은 달이 있는 경우

선택해제 클릭 후

근로를 제공한 달에만 체크한 다음  
불러오기 클릭

간소화 서비스에 수록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불러와 확인할 수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직접 입력 필요(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음)

2

금액 확인 후 하단의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계산된 공제금액 확인 후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

## ▶ 그 밖의 소득공제

(단위: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38.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 가입)	0	4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0
39.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0	① 계산하기	
40. 주택마련저축	0	43.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0
계산하기		도움말	
청약저축	0	44.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0
주택청약종합저축	0	도움말	
근로자주택마련저축	0	4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0
41. 투자조합출자 등	0	4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0
계산하기		47. 그 밖의 소득공제 계	0
도움말		도움말	
벤처기업투자	0		

## ▶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단위:원)

구분	금액
48.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0
도움말	
49. 종합소득 과세표준	55,678,000
50. 산출세액	7,602,720

## ▶ 세액감면

도움말

(단위: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51. 소득세법상 세액감면(제59조의 5)	0	54. 조세조약(원어민교사 등)	0
52. 조세특례한법상 세액감면(제18조 외)	0	55. 세액감면 계	0
53. 조세특례한법상 세액감면(제30조)	0		

- ① 간소화 자료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려는 경우 클릭

그 외 공제나 감면 항목은 정정하고자 하는 공제 항목의 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수정

- 40. 주택마련저축과 41.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는 계산하기 버튼을 이용해 팝업창에서 금액 입력 가능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려는 경우 53. 칸에 감면세액 입력



도움말 펼치기

상단의 1번부터 5번까지는 근로기간 동안의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등의 사용금액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전통시장+대중교통+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신용카드+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합계액입니다.

1

* 귀속년도	2023	<input type="button" value="전체선택"/>	<input type="button" value="선택해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1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2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3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4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5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6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7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8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9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월	<input type="button" value="불러오기"/>
--------	------	-------------------------------------	-------------------------------------	--	--	--	--	--	--	--	--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자료제공 동의여부	합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문화공연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파밀범	710720*****	배우자	N	0	0	0	0	0	0
<input checked="" type="checkbox"/>	테스트개…	800101*****	소득자 본인	Y	13,320,000	12,000,000	240,000	360,000	360,000	360,000

금액

총 급여액 54,000,000

신용카드 등 사용액 합계

① 전통시장 사용액	1월~3월	13,320,000
	4월~12월	90,000

② 대중교통 사용액

③ 현금영수증, 직불 · 선불카드 사용액(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미술관 제외)	1월~3월	270,000
	4월~12월	360,000

④ 신용카드 사용액(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 공연 · 영화 · 신문 · 박물관 · 미술관 제외)

⑤ 도서 · 공연 · 영화 · 신문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	1월~3월	240,000
	4월~12월	12,000,000

⑥ 도서 · 공연 · 영화 · 신문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	1월~3월	90,000
	4월~12월	270,000

신용카드 사용액	1월~3월	30,000
	4월~12월	90,000

현금영수증, 직불 · 선불카드 사용액	1월~3월	60,000
	4월~12월	180,00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0

2

3

닫기

계산하기

적용하기

1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를 계속 제공한 경우 **전체선택** 버튼 클릭

근로하지 않은 달이 있는 경우  
**선택해제** 클릭 후  
근로를 제공한 달에만 체크한 다음  
**불러오기** 클릭

간소화 자료로 제출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확인 가능

2

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수정이 필요한 금액이 있는 경우 직접 수정입력

3

**계산하기** 버튼으로 소득공제액 확인 후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 화면  
으로 이동

## ④ 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단위:원)

구분	공제대상금액	금액	구분	공제대상금액	금액
56. 근로소득		500,000	64. 기부금 계		594,318
57. 공제대상자녀	도움말	<input type="checkbox"/> 명 0	64-1.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이하)	100,000	90,909
출산·입양자	<input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type="checkbox"/> 셋째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명 0		64-2.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초과)	400,000	60,000
연금계좌	계산하기	784,000	64-3.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	100,000	90,909
58.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141,000	64-4.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	0	0
5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233,000	64-5.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2,000,000	300,000
60. 연금저축		365,000	64-6. 우리사주조합기부금	0	0
60-1. ISA만기 시 연금 계좌납입액		45,000	64-7.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350,000	52,500
61. 보험료	계산하기	120,000	65. 특별세액공제 계(61+ ~ + 64)	39,774,600	6,114,408
일반 보장성		120,000	66. 표준세액공제	도움말	0
장애인 전용 보장성		0	67. 납세조합공제		0
62. 의료비	계산하기	32,480,000	68. 주택차입금	도움말	0
63. 교육비	계산하기	4,224,600	69. 외국납부	도움말	0
			70. 월세액 세액공제	도움말	0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
			71. 세액공제 계		6,718,488

①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 또는 손자녀(8세 이상~20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입력

'23년 중 출산하거나 입양한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해당 출산(입양)자녀가 첫째/둘째/셋째 이상 인지 여부에 따라 체크

②

간소화자료 등을 이용해 연금계좌 세액공제금액을 수정할 경우 클릭 (슬라이드 13의 팝업 이동)

③

간소화자료 등을 이용해 보험료 세액공제금액을 수정할 경우 클릭 (슬라이드 14의 팝업 이동)

④

간소화자료 등을 이용해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을 수정할 경우 클릭 (슬라이드 15의 팝업 이동)

⑤

간소화자료 등을 이용해 교육비 세액공제금액을 수정할 경우 클릭 (슬라이드 16의 팝업 이동)

⑥

간소화자료 등을 이용해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을 수정할 경우 클릭 (슬라이드 17의 팝업 이동)

⑦

그 외 공제나 감면 항목은 정정하고자 하는 공제 항목의 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수정

- 70. 월세액 세액공제는 공제대상 금액 입력 시 세액공제 금액 자동 계산

항목	지출금액
① 과학기술인공제	141,000
② 퇴직연금	233,000
③ 연금저축	365,000
④ 소계(① + ② + ③)	739,000
<b>공제대상금액</b>	739,000
<b>세액공제액</b>	88,680

항목	지출금액
ISA계좌 만기 시 퇴직연금 계좌 전환액(만기 후 60일 이내 납입분)	18,000
ISA계좌 만기 시 연금저축 계좌 전환액(만기 후 60일 이내 납입분)	27,000
<b>ISA계좌 관련 공제대상금액</b>	45,000
<b>ISA계좌 관련 세액공제액</b>	5,400

① (단위:원) **불러오기**
  
② **계산하기**   **적용하기**   **닫기**

- 1** 간소화자료로 제출된 퇴직연금계좌·연금계좌 납입금액과 ISA 계좌 만기 후 60일 이내에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확인 가능
- 2** 계산하기 버튼으로 소득공제액 확인 후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

**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성명(계약자)	주민등록번호	관계	납입금액	
			일반보장성 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테스트개인	800101*****	소득자 본인	120,000	0

(단위:원)

구분	납입금액
① 일반 보장성보험	120,000
②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0
③ 소계 (① + ②)	120,000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120,000
	14,400

**3**

-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를 계속 제공한 경우 **전체선택** 버튼 클릭  
근로하지 않은 달이 있는 경우 **선택해제** 클릭 후 근로를 제공한 달에만 체크한 다음 **불러오기** 클릭
- 간소화 서비스에 수록된 일반·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확인 및 수정 가능
- 계산하기** 버튼으로 소득공제액 확인 후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

1

\* 귀속년도 2023 ▼ 전체선택 선택해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도움말 펼치기

불러오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지출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테스트개인	800101*****	소득자 본인	20,000

(단위:원)

구분	지출금액
① 총 금액	80,000,000
②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35,000,000
③ 난임시술비	0
④ 미숙아·선천성미상아	0
⑤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0
⑥ 실손의료보험금(본인)	120,000
⑦ 실손의료보험금(부양가족)	0
⑧ 소계(② + ③ + ④ + ⑤) - ⑥ - ⑦	34,880,000

공제대상금액

32,480,000

세액공제액

4,872,000

2

3

닫기

계산하기

적용하기

1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를 계속 제공한 경우 **전체선택** 버튼 클릭

근로하지 않은 달이 있는 경우 **선택해제** 클릭 후

근로를 제공한 달에만 체크한 다음 **불러오기** 클릭

2 간소화 서비스에 수록된 의료비와 실손의료 보험금 금액을 불러와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간소화 서비스에 제출되지 않은 의료비 지출액이 있는 경우 추가로 수정입력 가능

3 계산하기 버튼으로 소득공제액 확인 후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

1

\* 귀속년도 2023 ▼ 전체선택 선택해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불러오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공제종류구분	교육비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테스트개인	800101*****	소득자 본인	소득자 본인	4,224,600	0	0

2

교육비 직접입력

가족입력 추가

가족입력 삭제

(단위:원)

구분	지출금액
소득자 본인	0
장애인 특수교육비	0
가족 1	0
3 취학전 아동	0
가족 2	0
소득자본인 공제대상금액	4,224,600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대상금액	0
취학전 아동 공제대상금액	0
초중고 공제대상금액	0
대학생 공제대상금액	0
공제대상금액	4,224,600
세액공제액	633,690

4

계산하기

적용하기

닫기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를 계속 제공한 경우 전체선택 버튼 클릭

(하단의 계산하기 버튼 불필요, 적용하기 클릭하여 신고서 작성화면 바로 이동)

간소화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세액공제 금액을 입력하려는 경우 교육비 직접입력 클릭

- 입력 인원 추가/삭제가 필요한 경우 가족 입력 추가/삭제 버튼 이용

교육비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해당되는 학생 신분을 선택하고 지출한 교육비 금액 입력

1. 취학전 아동 } 1인당 3백만원 한도
2. 초·중·고등학생 } 1인당 9백만원 한도
3. 대학생 ————— 1인당 9백만원 한도

- 학생 신분에 따라 공제 한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히 선택

4

계산하기 버튼으로 소득공제액 확인 후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

## 기부금명세서

· 해당연도 기부명세

(단위:원)

기부금명세서 불러오기

해당연도 기부명세 추가

선택내용 삭제

4

기부자

기부처

기부내역

No	기부금 코드	기부내용	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상호(성명)	건수	공제제외 기부금		기부금합계
							기부장려금	기타	
1	특례기부금_소▼		테스트개인(아▼	●●●●●●●●●●		1	2,000,000	0	2,000,000
2	정치자금기부▼	800101	테스트개인(아▼			1	500,000	0	500,000
3	일반기부금_소▼		공목자▼	●●●●●●●●●●		1	350,000	0	350,000
4	고향사랑기부▼		테스트개인(아▼			1	100,000	0	100,000

· 기부금 내역 중 기부장려금 등 공제 제외 기부금을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공제 대상금액에서 차감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연도 기부명세에 입력된 자료는 '기부코드' 별로 합산되어 '기부금 조정명세'에 자동 입력됩니다.

· 기부금 조정명세

(단위:원) 전년도 기부금조정명세 불러오기

기부금 조정명세 추가

선택내용 삭제

5

No	기부금 코드	기부년도	기부금액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공제대상금액	해당연도 공제금액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멸금액	
1	특례기부금_소▼	2023▼	2,000,000	0	2,000,000	0	0	2,000,000	0	0
2	정치자금기부▼	2023▼	500,000	0	500,000	0	0	500,000	0	0
3	일반기부금_소▼	2023▼	350,000	0	350,000	0	0	350,000	0	0
4	고향사랑기부▼	2023▼	100,000	0	100,000	0	0	100,000	0	0

-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할 금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 조정명세 우측 이월금액에 해당금액을 입력하시면 해당연도 공제금액에 자동 계산됩니다.

- '기부금 조정명세 추가'를 클릭하면 추가로 기부금 이월금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연도 기부명세'에서 자동입력된 자료는 해당연도 기부명세에서 수정/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이월금 입력 시 기부금 코드와 기부년도 별로 기부금액을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발생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먼저 해당연도 공제금액에 적용하고 남은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기부금을 적용함

6

등록하기

닫기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내역 알림 펼치기

1 연말정산 시 제출한  
기부금명세서 내역 불러오기

2 연말정산 때 제출하지 않은  
기부내역 추가 입력

3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기부금 중  
공제대상이 아닌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해당연도 기부명세에서 항목 체크  
하고 선택내용 삭제 클릭

4 기부금 코드 및 기부자 적정여부,  
기부처 사업자 등록번호·상호  
공제대상 및 공제제외금액  
적정 기재여부 확인

5 '23년 이전 기부한 금액 중  
'23년도 신고시 (이월)공제 받을 금액  
확인 및 불러오기

기부년도가 '23년 이전인 기부금은  
'23년 귀속 신고 이전 공제된 금액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입력 시  
'23년 공제대상 금액 자동 계산

6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 화면 이동

## 납부(환급)세액

※ 아래의 '75.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은 당해화면 상단 균무지별 소득명세 오른쪽 [입력/수정하기] 클릭후 '원천징수영수증상결정세액소득세' 항목에 서 입력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해야합니다.  
(홀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종료후 클릭 한번으로 간편하게 신고)

구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72. 결정세액(50-55-71)	884,232	0
73.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2,700,000	0
74. 차감납부할 세액(72-73)	-1,815,768	0
75. 납부특례세액차감	0	
납부특례세액가산	0	
76. 분납할세액(2개월 이내)	0	0
77. 신고기한내 납부세액	-1,815,768	0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사실 그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 소득세 신고 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가산세 부과 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①

-1,815,768

②

 이에 동의합니다.

## ▶ 환급받을 계좌

- 본인명의의 자유입출금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CAM 등 가상계좌 및 외국계 은행 계좌 등으로는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수령을 위한 금융기관정보 입력 시 농협은행과 지역농축협 은행의 구분을 정확하게 선택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 환급금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적정여부 검토후 6월말~7월초경 신고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소득세 환급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은행

100511122222

4

이전

제출화면으로 이동

1 신고 결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추가 환급세액(음수) 금액 확인 후

2 신고한 내용이 이상이 없는 경우 체크  
\* 체크하지 않을 경우 다음 화면 이동 불가

3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세액을 지급받을 본인명의 계좌의 은행/ 계좌번호 입력  
\* 오류입력 시 환급 불가  
\*\* 본인명의 계좌가 아닌 경우 환급 불가

4 유의사항 확인 후  
클릭 시 신고서 제출 화면으로 이동

소득자

테\*\*\* ( 800101-\*\*\*\*\* )

귀속년도

2023

신고유형

정기신고(40,비사업자)

## ④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종합소득세 -1,815,768 원

농어촌특별세 0 원

1

상세내역 접기 ▲

구분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합소득금액	66,250,000 원	0 원
과세표준	55,678,000 원	0 원
산출세액	7,602,720 원	0 원
납부(한급)할 총 세액	-1,815,768 원	0 원
납부특례세액차감	0 원	0 원
납부특례세액가산	0 원	0 원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0 원	0 원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1,815,768 원	0 원

## ⑤ 환급계좌 정보

금융회사 은행 계좌번호 10051112222222

## ⑥ 개인정보 지방자치단체(위택스) 통보 제공동의

소득세 신고서의 전화번호, 환급계좌번호, 세무대리인 사업자번호를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위택스)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2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과 납부서를 확인하여 5월 31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 신고 종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

1

'상세내역 펴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  
신고한 내역 확인 가능 (음영 표시한 부분)

2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신고서의 전화번호·환급계좌번호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데 동의할 경우 체크

3

클릭 시 신고서 제출 완료되며  
접수증 확인·납부서 출력 가능

3

신고서 제출하기

사용자 ID	xnts_user111	사용자명	태 ****		
접수번호	101-2024-2-600001264596	접수일시	2024-04-26 11:36:38	접수결과	정상

## 제출내역

상호(성명)	태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800101-*****
신고서종류	종합소득세 정기확정신고서	접수방법	인터넷(작성)
첨부한서류	5종	신고구분	정기(확정) / 정기신고

국세청홈택스에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1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단위 : 원)

## 상세내역

과세연월	2023년 01월	농어촌특별세 납부(환급)할세액	0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55,678,000	농어촌특별세 분납할세액	0
종합소득세 납부(환급)할 세액	884,232	농어촌특별세 신고기한내 납부할세액	0
종합소득세 분납할세액	0	농어촌특별세 충당후 납부세액	0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 납부할세액	884,232	종합소득세 충당후 납부(환급)세액	884,230

※ (중요) 접수증에 표시된 내용이 신고하고자 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정기신고인 경우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하더라도 최종 접수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 (확인)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최종 접수된 신고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신고서 접수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종합소득세' 첫화면에서 [신고 부속 · 증빙서류 제출]을 선택하여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내) 종합소득세 정기신고(5월신고분)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지급예정입니다.

※ 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관련 사항은 주소지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경정청구는 제외)를 위해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 · 납부서)」 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세요.

※ 귀하의 성실 신고 납부에 감사합니다. 성실납세 우대제도(세금포인트 제도, 모범납세자 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gt; 납세자권익24 &gt; 성실납세우대 &gt; 세금포인트·모범납세자

※ (안내)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그 체납된 세금에 충당되고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1

체크하여 아래 상세내역(과세연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납부(환급)세액 등) 확인

2

유의사항 확인 후 체크하면  
하단 버튼을 이용하여 신고서 접수증 및 납부서 출력 가능

2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잘하는 정부 더 편안한 국민

국세청 원천세과